

서 약 서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이를 어겨 발생한 행위 또는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함에 있어 소관업무 및 관련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0000. 00. 00.

서약자성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